

북한 교화소



한동호 · 도경옥 · 이우태 · 임예준

북한 교화소



한동호(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도경옥(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우태(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임예준(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북한 교회사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북한 교화소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 론	1
II. 북한 교화소 개관	3
1. 교화소 개요	3
2. 교화소 현황	12
III. 전거리교화소 실태	13
1. 위치·규모·구성	13
2. 인권침해 실태	15
가. 비인도적 구금환경	15
나. 과도한 노동량	18
다. 폭행·처벌·처형	18
라. 수감 중 사망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21
IV. 개천교화소 실태	22
1. 위치·규모·구성	22
2. 인권침해 실태	24
가. 비인도적 구금환경	24
나. 과도한 노동량	26
다. 폭행·처벌·처형	28
라. 수감 중 사망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29
V. 결 론	30

I. 서 론

북한의 교화소는 북한 「형법」에 의거한 공식적 구금시설이다. 하지만, 그 실태 및 운영에 있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 내에서는 일상적 차원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내지 인권유린 현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이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의 존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 본 보고서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인권침해라는 틀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실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북한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사회와 더불어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집중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화소는 함경북도 회령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천교화소이다. 이 두 곳의 교화소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전거리 및 개천교화소가 강제송환된 북한주민이 주로 수감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강제송환 이후 북한주민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유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보위부 구류장 및 도 집결소를 거쳐 송환자의 주소지 보안서 구류장으로 이관되어 예심 및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형법」

상 비법국경출입죄(제221조)의 경우, 노동단련형 또는 노동교화형으로 처벌되지만, 6개월 이하 노동단련대로 결정되거나 혹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확인된다. 하지만, 주소지 보안서 구류장에서 노동교화형을 받게 되면, 전거리교화소 혹은 개천교화소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¹⁾

둘째, 북한정보의 상대적 부재에도 불구하고 전거리 및 개천교화소를 둘러싼 증언은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비교적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지난 수년간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특히 교화소 경험자를 중심으로 교화소 위치 및 현황, 운영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교화소 내 시설, 수감절차, 영양 및 의료환경,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교화소 내부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축적해 왔다. 2010년부터 2014년 기준, 약 1125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교화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는 약 120~130여명으로 파악된다.²⁾ 이들 중 다수가 전거리 및 개천교화소 경험에 대해 증언해 주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4년 수행된 심층면접 자료가 주된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는데,³⁾ 면접조사 초기에는

1) 이러한 점은,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구성에서 국경연선 지대 그 중에서도 회령, 무산, 청진 등 함경북도 지역과 혜산을 비롯한 양강도 출신이 대다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강제송환 될 경우, 신의주, 온성, 만포 등지의 보위부 구류장에 일차적으로 구금되며, 도 집결소를 거쳐, 본인 주소지의 보안서 구류장으로 가서 주변 지역 교화소에 수감되게 된다. 다만, 양강도의 경우 양강도 소재 교화소가 따로 없으므로 개천, 중산, 함흥 등지의 교화소로 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거리교화소의 경우, 여자수형자의 약 70~80%가 비법월경자로 파악되는데, 이는 일반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2) 응답자 중 교화소 2곳을 경험했거나 동일 교화소를 2회 이상 경험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교화소 경험 응답숫자가 범위로 설정되었다.

3) 본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2010년에서 2014년의 기간 동안 수행된 북한이탈주민 심

교회소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면 조사횟수가 거듭되면서 점차 교회소 관련 세부내용 파악 및 유사한 내용의 상호교차 방식을 통해 증언을 축적하여 재검토하였다. 상기한 심층면접조사 이외에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교회소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북한 교회소 전체 현황을 개괄하고, III장과 IV장에서 각각 전거리 및 개천교회소 실태 및 운영을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라는 관점으로 살펴본다. V장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 교회소 개관

1. 교회소 개요

교회소는 국방위원회 직속의 인민보안부 교회국에서 관할하는 교정 시설로, 재판소에서 노동교회형을 선고 받은 자를 수감하는 곳이다. 북한 「형법」에 따르면, 노동교회형은 범죄자를 교회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무기노동교회형과 유기노동교회형으로 구분된다(제30조).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노동교회형은 우리 「형법」상 징역형과 유사하다. 현행 북한 「형법」은 총 7개 범죄(국가전복음모죄, 테로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 마약 밀수·밀매죄,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 무기노동교회형

층면접과 이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DB)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개천교회소 분석의 경우 2015년 증언이 2건 정도 활용되었다.

을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5조, 제68조, 제208조, 제266조).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범죄에는 유기노동교화형이 규정되어 있다. 유기노동교화형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되어 있고,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유기노동교화형 1일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제30조). 무기노동교화형과 유기노동교화형의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권리가 일부 정지된다(제30조).

참고로 북한에는 교화소 이외에도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관리소 등의 구금 및 교정시설이 있다. 노동단련대는 재판소에서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은 자 또는 검사에 의해 노동단련 처벌을 부과 받은 자를 수감하는 곳이다.⁴⁾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은 자는 인민보안부 관할의 노동단련대에 수감되고, 노동단련 처벌을 받은 자는 인민위원회 관할의 시·군·구역 단위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결소는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불량아, 사건 계류자, 강제송환 탈북자 등을 조사하고 수감하는 곳이다. 각 도마다 도 인민보안국 관할의 집결소를 운영하고 있다. 구류장은 범죄혐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곳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 및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 및

4) 북한 「형법」에서는 자유형으로서 노동교화형과 함께 노동단련형을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노동단련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단련형의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되어 있다(제31조). 노동교화형의 경우에는 형벌집행기관을 교화소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단련형의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장소’는 노동단련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형법」과는 별개로 북한 「검찰감시법」에서는 검사에게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노동단련 처벌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40조). 즉, 북한 법률상 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형벌로서의 노동단련형과 검사가 법을 어긴 자에게 부과하는 법적 제재로서의 노동단련 처벌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재판소에서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은 자 또는 검사에 의해 노동단련 처벌을 부과 받은 자가 수감되는 곳이 노동단련대이다.

예심원이 담당하며, 일반범죄사건의 수사 및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 및 예심원이 담당하므로(제46조 및 제48조), 구류장은 국가안 전보위부 구류장과 인민보안부 구류장으로 구분된다. 관리소는 정치범 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 나 현재 총 5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⁵⁾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 주체인 관리소와 인민보안부가 관리 주체인 관리소로 구분된다.

○〈표 11-1〉 북한 「형법」상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이 규정된 범죄 유형

범죄 유형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복음모죄 • 테로죄 • 조국반역죄 • 파괴, 침해죄 • 민족반역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국가선전, 선동죄 • 간첩죄 •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 단절사촉죄 • 외국인에 대한 적대 행위죄 •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 조선민족적대죄 •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등 	-
		5개 범죄	14개 범죄	-
제4장	국방관리 질서를 침해한 범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령, 결정, 지시집행 태만죄 • 전략예비물자의 조성 및 전시생산준비태만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품매매죄 • 기피자, 탈영자은닉죄 • 군인으로 기장한 죄 등
		-	14개 범죄	17개 범죄

5) 자세한 내용은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통일연구원, 2013).

범죄 유형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제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산대량략취죄 • 국가재산강도죄 •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 탈세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매매죄 • 외화사용질서위반죄 • 국가납부질서위반죄 • 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죄 • 법인행세죄 • 비법적인 작업 또는 수송죄 • 화차, 짐배리용질서 위반죄 • 인민경제계획규를 위반죄 • 계약규를위반죄 • 비법적인 경제관리죄 등
		-	52개 범죄	88개 범죄
제6장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밀수, 밀매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력사유적, 유물명승지, 천연기념물과실적파손죄 • 저작, 발명, 창의고안 목살죄 • 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 • 컴퓨터망침입죄 • 허위정보입력, 류포죄 • 후비양성질서위반죄 • 체육선수선발질서위반죄 • 치료거부죄 등
		1개 범죄	18개 범죄	26개 범죄
제7장	일반행정 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령공, 령해침입죄 • 대외적권위훼손죄 • 비법국경출입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풍설날조, 류포죄 • 공인비법사용, 위조죄 • 출판질서위반죄 • 일반범죄불신고죄 • 봉인손상죄 • 담보처분한 재산비법 처분, 리용죄 • 부당한 신소죄 • 월권행위죄

범죄 유형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적부담을 시킨 죄 • 신소, 청원처리질서위반죄 • 국가기관권위훼손죄 • 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 등
		-	24개 범죄	24개 범죄
제8장	사회주의 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범죄	-	• 미성인범죄추진 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참용죄 • 거짓행세죄 • 명예, 칭호참용죄 •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 회피죄 • 습득물횡령죄 • 략취물건거래죄 •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 등
		-	13개 범죄	19개 범죄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 고의적중 살인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경살인죄 •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 고의적중상해죄 • 유괴죄 • 강간죄 • 개인재산대량략취죄 • 개인재산강도죄 •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 략취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방위초과살인죄 • 고의적경상해죄 • 폭행죄 • 비법자유구속죄 • 어린이훔친 죄 • 모욕 및 명예훼손죄 등
		1개 범죄	19개 범죄	16개 범죄

노동교화형의 집행절차는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노동교화형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 판정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해당 형벌집행기관이 하며(제423조),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판

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한다(제424조). 노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하고,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한다(제430조). 형벌집행을 중지받은 자에게는 의료처분을 적용하거나 자택구속처분을 적용하며, 그 관리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이 한다(제434조). 노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렸거나 죽은 경우에는 법의감정(法醫鑑定)을 거쳐 형벌집행을 기각한다(제431조). 병보석으로 잠시 퇴소하였다가 다시 입소했다거나 아예 풀려났다는 증언도 일부 있으나,⁶⁾ 열병, 결핵 등의 전염병과 영양실조로 동료 수형자들이 교화소 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다수의 증언들에 비추어 볼 때, 중한 환자에 대한 형집행중지 규정은 잘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이에 비해 임신부에 대한 형집행중지 규정은 상대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었었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임신부였던 다른 수형자가 출산으로 인하여 6개월간 퇴소하였다가 다시 입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⁸⁾ 2009년에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임신부는 출산 전후로 집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교화소로 들어온다고 증언하였다.⁹⁾ 다만, 강제송환된 임신부의 경우에는 주로 ‘중국어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집결소나 구류장에서 강제낙태를 당한 후 교화소에 수감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⁰⁾

6) NKHR2011000130 2011-05-31; NKHR2013000155 2013-08-20.

7) NKHR2014000031 2014-04-15; NKHR2014000015 2014-03-18; NKHR2014000081 2014-07-01 외 다수의 증언.

8) NKHR2011000082 2011-03-29.

9) NKHR2013000124 2013-06-25.

10) 도경욱 외, 『북한인권백서 2015』(통일연구원, 2015), pp.95, 96.

한편, 북한 「형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이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될 수도 있는데, 특사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시하고,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제54조). 북한은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정권수립일 등 중요한 기념일에 사면을 실시해 왔다. 근래에는 2012년에 김일성 100회 생일과 김정일 70회 생일을 계기로 대사가 실시되었고, 2015년에 광복 70주년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대사가 실시되었다. 모든 범죄자가 대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신매매, 살인범, 유색금속 밀수·밀매, 한국행 기도 등은 대사에서 제외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있으나,¹¹⁾ 한국행 기도의 경우 엇갈리는 증언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¹²⁾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형기단축 및 만기 전석방도 가능하다. 유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형집행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줄 수 있고, 무기노동교화형과 유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완전히 교양개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유기노동교화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무기노동교화형은 10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5조). 유기노동교화형을 받고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모범적인 생활로 형기를 단축 받고 조기 출소하였다는 증언들은 다수 있었다.¹³⁾

북한에서 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밀수, 절도, 빙두거래 등을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일부 있지만, 도강을 이유로 수감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도강은 북한 「형법」상 ‘비법국경출입죄’로 처벌 받게 되는데, 현행 북한 형법은 제221조에서

11) NKHR2013000022 2013-02-05.

12) NKHR2011000021 2010-06-07.

13) NKHR2011000244 2011-11-22; NKHR2011000052 2011-02-15; NKHR2011000056 2011-02-22; NKHR2012000236 2011-11-22.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그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은 2009년 형법 개정 시부터 규정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즉, 2009년을 기점으로 도강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는 2년 또는 3년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5년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상당 수 있어, 실제로도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비법국경출입죄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보안국 소속의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보안국 소속의 개천교화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2〉 교화소 수감 경험자 죄명 및 형량(2010~2014년 면접 조사 결과)

구금시기	죄명	교화소	형량	NKHR
2003년	국가재산훔친죄	전거리교화소	노동교화형 5년	2012000063
2004년	개인재산약취죄	개천교화소	노동교화형 8년	2014000111
2009년	마약밀수·밀매죄	전거리교화소	노동교화형 1년6개월	2011000173
2010년	마약밀수·밀매죄	개천교화소	노동교화형 5년	2014000171
2005년	밀수죄	함흥교화소	노동교화형 3년	2011000129
2009년	밀수죄	개천교화소	노동교화형 5년	2013000124
2010년	밀수죄	개천교화소	노동교화형 1년	2013000147
2007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화소	노동교화형 3년	2011000082, 2011000184 2011000201, 2012000015 2012000069, 2012000090
2007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화소	노동교화형 2년6개월	2011000048
2007년	비법국경출입죄	함흥교화소	노동교화형 2년	2011000078, 2012000087 2012000137
2007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화소	노동교화형 2년	2012000205

구금시기	죄명	교회소	형량	NKHR
2007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1년6개월	2012000089
2008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3년	2011000041, 2011000052 2011000119, 2011000172 2011000241, 2011000242 2011000247, 2012000146 2013000148, 2014000015 2014000123, 2014000134
2008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2년	2010000108, 2014000094
2008년	비법국경출입죄	증산교회소	노동교회형 2년	2014000130
2008년	비법국경출입죄	개천교회소	노동교회형 1년6개월	2012000074
2008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1년6개월	2012000009
2008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1년	2012000228
2009년	비법국경출입죄	함흥교회소	노동교회형 5년	2013000043
2009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4년	2013000225
2009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3년6개월	2014000132
2009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3년	2012000065, 2013000040 2013000096
2009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2년6개월	2014000097
2009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2년	2011000080, 2012000077
2009년	비법국경출입죄	신흥교회소	노동교회형 1년6개월	2012000160
2010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5년	2013000198, 2014000048 2014000090, 2014000107
2010년	비법국경출입죄	개천교회소	노동교회형 5년	2013000156
2010년	비법국경출입죄	개천교회소	노동교회형 4년	2014000012
2010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2년	2013000122
2010년	비법국경출입죄	함흥교회소	노동교회형 2년	2013000189
2010년	비법국경출입죄	개천교회소	노동교회형 1년	2013000121
2011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5년	2014000151
2011년	비법국경출입죄	개천교회소	노동교회형 5년	2014000175
2011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3년	2011000056, 2014000040

구금시기	죄명	교회소	형량	NKHR
2011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년	2012000161, 2012000264 2012000159
2012년	비법국경출입죄	전거리교회소	노동교회형 2년	2014000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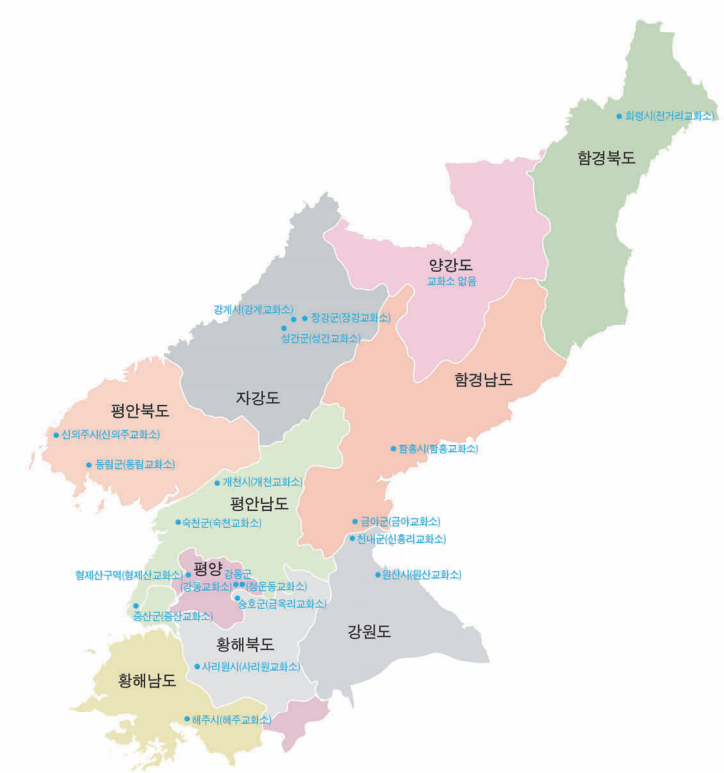
2. 교회소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 현재 북한에는 19개의 교회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Ⅱ-3〉 조직도



◉ <그림 II-1> 교화소 소재지



Ⅲ. 전거리교화소 실태

1. 위치·규모·구성

전거리교화소는 함경북도 보안국 소속의 교화소로서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에 소재하고 있다. 위성사진 <그림 III-1>에서 보면 북위 42.2103/동경 129.7536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전거리교화소는 북중 국경지대인 함경북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 으로부터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수감 비율이 높은 교화소이고, 증언 에 따르면 수형자의 약 70%정도가 비법월경으로 수감되어 있다고 한 다.¹⁴⁾ 전거리교화소는 원래 남성 전용 교화소였으나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여성도 수감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전거리교화소의 수감인원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리는데 증 언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전체 수감인원은 약 3000~4000명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이 중에서 여성 수감인원은 약 800~100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거리교화소는 1과부터 5과까지 수형자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1, 2, 4, 5과는 남성수형자가 편성되어 있고 여성수형자는 3과에 포

14) 2009년~2010년 수감, NKHR2014000048 2014-05-13.

함되어 있다. 1과는 목공, 벽돌, 공업, 차수리, 낙후자반 등 12개의 반이 있고, 2과는 주로 본소에서 1.5km 떨어진 동갱에서 동광석을 캐는 갱노동을 하며, 여성이 수감되어있는 3과는 농사, 가밭, 축산 등 총 10개반 정도가 있다고 한다. 4과는 주로 석회석을 생산하며 5과는 2011년 이전에는 선광(광석 가공)을 하였으나 2011년 5월부터 농사과로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다는 증언도 있다.¹⁵⁾

2. 인권침해 실태

가. 비인도적 구금환경

전거리교화소는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수형자들의 위생 상태가 극도로 불량하고 부족한 영양공급, 의료시설 및 약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수형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거리교화소 수형자들은 35~60명 정도의 인원이 냉·난방이 전혀 안 되는 한 방에서 생활을 한다. 다수의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앉아 있기도 불편할 정도이고 감방 안에 재래식 구조의 변기가 1개 밖에 없어 악취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¹⁶⁾ 또한 감방에 이, 빈대, 벼룩이 너무 많지만 교화소 측에서 방역을 해주지 않아 수형자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이고 빈대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양잿물을 사용하거나 개인이 외부에서 약을 사서 방역을 하기도 한다.¹⁷⁾

15)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5』(통일연구원, 2015), pp.73~74; 윤여상 외,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계와 인권실태』(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p.301.

16) 2009년 7월~2011년 11월 수감, NKHR2013000022 2013-02-05;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3000040 2013-03-05; 2008년~2010년 수감, NKHR2013000148 2013-08-06.

식수는 따로 공급해 주지 않아 수행자들이 개울물을 길어다 쓰고 비누 등 보급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외부 면회자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아울러 의복이 1회 제공되기는 하지만 수행자의 30%정도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주로 면회자들이 가져오는 옷을 가지고 수행자가 스스로 만들어 입는다고 한다.¹⁸⁾ 전거리교화소 수행자들은 양과 질이 모두 열악한 배식을 받다보니 영양상태가 매우 심각하며 교화소 생활에서 가장 힘든점을 ‘배고픔’으로 꼽을 정도이고, 가족들이 면회를 오지 않을 경우 허약과 질병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¹⁹⁾

교화소 식사는 돌과 같은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도정이 되지 않은 강냉이 밥과 염장국(소금국)이 세 끼 제공되지만 실제로는 국에 간이 되어 있지 않아 ‘씩은 국’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규정은 일인당 430~450그램의 식사량을 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만 공급이 되어 수행자의 식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⁰⁾

“개밥 있지 않은가. 강냉이 키질 안 한거에 돌 있고 그런 거에 단지밥이 나왔다. 그걸 죽밥을 만들어서 300그램 떠서 준다...

17) 2009년 1월~2012년 2월 수감, NKHR2013000019 2013-02-05; 2009년 7월~2011년 11월 수감, NKHR 2013000022 2013-02-05;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3000040 2013-03-05; 2008년 10월~2011년 7월 수감, NKHR2014000015 2014-03-18; 2010년 수감, NKHR2014000031 2014-04-15.

18)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3000040 2013-03-05; 2011년~2012년 수감, NKHR2013000122 2013-06-25; 2008년~2010년 수감, NKHR2013000148 2013-08-06; 2005년~2011년 수감, NKHR2012000185 2012-09-11.

19)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3000040 2013-03-05; 2009년~2011년 수감, NKHR2013000096 2013-05-14.

20) 2004년~2007년 및 2007년~2011년 수감, NKHR2012000123 2012-06-26;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3000040 2013-03-05.

소금을 먹이면 다리에 힘이 생겨서 도망친다고 소금도 안타서 준다.”

(2009년~2012년 2월 수감, NKHR2013000019 2013-02-05)

이렇듯 전거리교화소 내 수형자들에게는 생필품 및 식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화소 안에는 밥이 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으며 수형자들은 부족한 밥을 모아 교화소 내에서 옷, 신발, 비누 등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다.²¹⁾

“교화소에서 배급되는 식사량은 일인당 450그램을 주어야 하지만 이조차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중간에서 착복하기 때문에 남은 쌀을 물에 불려서 죽을 만들어 그램수를 부풀려서 주었으며 그 마저도 썩은 것이라 냄새가 심했다. 그러니까 영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많이 쓰러졌다.”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4000132 2014-08-26)

전거리교화소에는 결핵, 허약, 간염 병동 등 총 3개의 병동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허약 병동은 포화상태이며 병동 내에서 사체를 곁에 두고 식사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또한 교화소 내에 있는 위생실은 실제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형자가 노동 중 외상을 입었어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²²⁾ 이러한 비인도적 구금환경 속에서 교화소 내에서 보통 하루에 1~2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며, 그 원인은 주로 허약과 질병 그 중에서도 특히, 결핵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화소 내에서 열병과 같은 전염병이 도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치료약이 지급되지 않으며 면회자가 외부

21)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4000132 2014-08-26.

22) 2008년~2010년 수감, NKHR2012000146 2012-07-17; 2012년 9월~2013년 9월 수감, NKHR2014000095 2014-07-15.

에서 약을 제공해 주지 않는 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²³⁾

나. 과도한 노동량

전거리교화소의 노동 시간 규정은 총 8시간(480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 및 휴식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이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여름철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8시까지, 겨울철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동을 하여 평균적으로 12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또한 수행자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과는 무관하게 할당량을 채울 때 까지 노동을 하게 되고 재범자반의 경우는 다른 곳보다 노동의 강도가 더욱 세고 가혹하다고 한다.²⁴⁾ 수행자들의 노임지급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출소 시 월급조로 노임을 받은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증언이 나뉘고 있다.²⁵⁾

다. 폭행·처벌·처형

전거리교화소 내에서의 가혹행위는 크게 구타 및 폭행과 낙후자반 별도 관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구타의 경우는 보안원 및 경비대원, 반장 등에 의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교화소 내부질서 위반으로 걸릴 경우 처벌 받는 종류는 급식처벌(식사량의 반만 제공),

23) 2007년~2010년 수감, 2012000008 2012-01-10; 2008년 1월~2010년 6월 수감, NKHR2014000123 2014-08-26.

24) 2004년~2007년 및 2007년~2011년 수감, NKHR2012000123 2012-06-26; 2011년 수감, NKHR2012000264 2012-12-04; 2012년 9월~2013년 9월 수감, NKHR2014000095 2014-07-15;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4000132 2014-08-26;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3000040 2013-03-05.

25) 2009년~2011년 수감, NKHR2013000112 2013-06-11; 2008년~2010년 수감, NKHR2013000148 2013-08-06; 2011년 수감, NKHR2012000065 2012-04-17.

대기처벌(밤새 불침번 세움), 독방처벌(1주일간 독방 수감), 낙후자반 수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낙후자반 수감대상은 도주 중 잡힌 경우, 교화소 내에서 도둑질 한 경우, 담배피우다 걸린 경우 등이 있으며 낙후자반에 수감될 경우 보통 6개월 정도 낙후자반에 있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면회가 금지된다고 한다. 또한 낙후자반 수형자들은 주로 변을 푸는 노동을 시키는데 노동 강도가 매우 세며 낙후자반에 수감될 경우 거의 다 죽는다고 본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다.²⁶⁾

“내가 대장염을 앓아서 대장이 안 좋았다. 조금만 있으면 대변이 마려워서 감시대에게 말없이 강냉이 밭에 들어가서 봤는데...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발로 뺨하고 찼다...대장염이 있어서 변소를 갔다고 했더니 맘대로 변소를 가냐고 엄청나게 맞았다. 구둣발로 막 짓밟겠다.”
(2010년 4월~2013년 1월 수감, NKHR2014000090 2014-07-15)

“재범자반 담당 선생이 대단히 무섭다. 그저 잘 못 보이면 막 정말 온데가 다 부서질 정도로 맞아대고...막 이렇게 무서운 선생이니까 거기서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그저 선생 눈 밖에 나지 않게...이렇게 살고자 한다.”
(2011년~2013년 수감, NKHR2014000040 2014-04-29)

수감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총살로 인한 처형의 사례가 증언되고 있는데 주로 교화소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총살되거나 교화소 내에서 살인을 하다가 잡혀서 총살되는 경우가 있었다. 총살은 보통 1과가 있는 본소 마당에서 시행되고 7명의 사수가 각자 자신의 탄창 하나를 모두 사용하며, 총살 된 시신을 수형자들이 한명

26)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3000040 2013-03-05; 2004년~2007년 및 2007년~2011년 수감, NKHR2012000123 2012-06-26; 2010년 수감, NKHR2014000031 2014-04-15; 2008년~2010년 수감, NKHR2012000146 2012-07-17.

씩 돌아가며 보게끔 강요한다고 한다.²⁷⁾

“교화소 내 사람들이 다 봤다. 1과에서 했다...죽기 직전에 거의 빈사 상태였다...그리고 총살을 해서 죽였다. 죽은 것을 한 사람 한사람 가서 보게 한다. 그렇게 교화소 사람들이 빙 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사람 죽은 것을 반영하고 반영문을 써야 한다. 그 사람 죽은 것에 대한 느낌을 쓰라는 것이 다...내 느낌을 쓰면 된다.”

(2010년 4월~2013년 1월 수감, NKHR2014000090 2014-07-15)

“달아나는 날에는 총을 쏘서 죽여가지고 우리에게 데려와서 보여준다...총 쏘서 피투성이가 된 거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 달아나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보여주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못 달아난다.”

(2009년 1월~2012년 2월 수감, NKHR2013000019 2013-02-05)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었던 탈북자들의 경우 대부분 성폭행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일반적으로 전거리교화소에는 임신한 여성은 수감에 있어서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교화소에 오기 전 낙태 후 수감이고 두 번째는 일시 출소 뒤 재수감이다. 낙태의 경우 보위부 구류장에서 조선아이인 경우는 낙태를 시키지 않고 중국아이인 경우는 그 자리에서 낙태를 시킨다고 한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수감되었을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시로 교화소에서 출소 시킨 뒤 출산을 하고 한두 달 뒤 계호원들이 수형자 집에 가서 아이를 강제로 떼어놓고 교화소로 수형자를 잡아온다고 한다.²⁸⁾

27) 2007년~2010년 수감, NKHR2012000090 2012-05-22; 2008년~2010년 수감, NKHR2012000146 2012-07-17; 2008년~2011년 수감, NKHR2011000119 2010-06-10; 2010년 4월~2013년 1월 수감, NKHR2014000090 2014-07-15.

28) 2010년 4월~2013년 1월 수감, NKHR2014000090 2014-07-15; 2007년 12월~2010년 6월 수감, NKHR2011000037 2011-01-11.

라. 수감 중 사망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전거리교화소 수감 중 사망의 경우는 대부분 허약과 질병이 원인이고 경비대나 계호원에게 구타를 당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주 중 총에 맞아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언에 따르면 보통 하루에 1~2명이 영양실조, 가혹행위, 질병으로 사망하고 특히 교화소에서는 결핵이나 열병과 같은 전염병이 매해 2~3달가량 발생하는데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에 30~5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한다고 한다.²⁹⁾

사망자 발생 시 교화소 내 위생실에서 1차 처리(시신 닦음)를 한 후 사체실로 옮기고 사체실에 1주일간 모아둔 사체를 매주 월요일 사체 화장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 모아두었던 사체를 차량에 싣고 불망산이라 알려진 화장시설로 옮긴다고 한다. 불망산으로 옮긴 사체는 원형으로 된 화장 기구에서 화장되는데 화장기구의 화력이 좋지 않아 화장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교화소 내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는다.³⁰⁾

“남자나 여자나 죽으면 지하에 넣어둔다. 그러다가 많이 차면 대차로 실어서 불망산에 가져간다. 남자들이 대차를 끌고서 나가는데 하루에 6차 나간 적도 있다. 그 불망산에 가면 남자들이 시체를 대자(大)로 펼쳐서 팔, 다리를 다 자른 후에 통안에 넣는다. 시체를 통나무에 넣어서 가지고 올라가야되는데 잘 안

29) 2009년~2011년 수감, NKHR2013000112 2013-06-11;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3000096 2013-05-14; 2008년~2010년 수감, NKHR2012000146 2012-07-17; 2003년 8월~2012년 2월 수감, NKHR2014000081 2014-07-01; 2012년 9월~2013년 9월 수감, NKHR2014000095 2014-07-15.

30) 2009년~2011년 수감, NKHR2013000112 2013-06-11; 2011년 수감, NKHR2012000065 2012-04-17; 2007년~2010년 수감, NKHR2012000090 2012-05-22; 2008년~2010년 수감, NKHR2012000146 2012-07-17.

들어가니까...사람 너무 많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재가 나오지 않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선생님들도 하는말이 "봐라. 너네 일하기 싫어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한다...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다."

(2009년 1월~2012년 2월 수감, NKHR2013000019 2013-02-05)

IV. 개천교화소 실태

1. 위치 · 규모 · 구성

개천교화소는 평안남도 보안국 소속의 교화소 중 하나로, 평안남도 개천시 약수동에 소재하고 있다. 위성사진 <그림Ⅳ-1>에서 보면 북위 39.7083/동경 125.9233에 개천교화소로 추정되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Ⅳ-1>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빨간 지붕이 보안원 청사이며, 면회실은 정문 옆 접수실에 위치하고 있다.³¹⁾ 교화소 인근에는 관리원인 군관 가족들이 사는 살림집이 있다. 개천교화소의 수용 인원 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린다. 개천교화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증언자 대부분은 3천명 내지 4천 명 정도의 시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형자들의 제한된 생활반경을 고려할 때 교화소의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개천교화소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매우 낙후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³²⁾, 미상의 시기에 관리소(정치범 수용소) 시설이 교화소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³³⁾

개천교화소는 남자동과 여자동으로 구분되며, 여자동은 다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여성 수형자들이 있는 무기동과 유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여성 수형자들이 생활하는 유기동으로 구분된다. 유기동 수형자와 무기동 수형자는 교류 및 접촉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여성 수형자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개천교화소는 중범죄자 수감시설인 것으로 파악된다.³⁴⁾

개천교화소 여성 수형자의 경우 농산반(농장반), 축산반, 남새반, 과수반, 밭갈이반, 뜨개반 등에 속해 노동을 한다. 뜨개반의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수형자들과 비법월경 및 인신매매 등 도주의 위험이 있는 수형자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들은 관리원들 건물 가까이 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수감생활을 하는데, 별도의 작업 공간 없이 감방 내에서 뜨개질 작업을 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개천교화소 남성 수형자의 경우 벽돌반, 포화반(신발, 허리띠, 권총집, 군화, 단화 등을 만드는 반)에서 노동을 하거나,³⁵⁾ 교화소 인근의 탄광에서 석탄을 캐

31) 2011년 6월~2014년 3월 수감, NKHR2014000175 2014-10-21.

32) 2014년 7월~2015년 7월 수감, NKHR2015000173 2015-12-01.

33)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5』(통일연구원, 2015), p.76.

34)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5』(통일연구원, 2015), p.76.

는 작업을 한다.³⁶⁾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취합해 볼 때, 개천교화소는 신발 및 피복 노동, 뜨개반 노동 등 공산품 생산에 특화된 교화소로 보인다. 증언자 중 대다수가 비법국경출입죄로 수감된 여성으로, 뜨개반 노동을 했으며, 해외로 수출되는 모자, 재킷, 식탁보 등을 주로 생산했다고 한다.

2. 인권침해 실태

가. 비인도적 구금환경

개천교화소의 비인도적이고 열악한 구금환경은 인간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처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천교화소 수형자들은 콘크리트 바닥에 냉·난방은 전혀 되지 않는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³⁷⁾ 감방 안에 물탱크와 변기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식수가 부족해 수형자 중 1인이 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³⁸⁾ 수형자들은 5일에 한 번 꼴로 순서를 정해 샤워하며, 비누 및 보금품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집에서 면회를 오지 않는 경우 생활이 불가능하다.³⁹⁾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던 증언자 모두가 수형 기간 중 방역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취약한 방역과 비위생적인 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2011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

35) 2009년~2011년 수감, NKHR2013000115 2013-06-11.

36) 2011년~2012년 아버지 수감, NKHR2013000195 2013-10-29.

37) 2009년~2011년 수감, NKHR2013000115 2013-06-11.

38) 2010년 수감, NKHR2013000121 2013-06-25.

39)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4000124 2014-08-26.

감생활을 한 증언자는 파라티푸스로 인해 하루 십여 명 정도가 사망한 적이 있다고 했다.⁴⁰⁾

수형자들은 제한된 배식으로 영양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감생활을 한 증언자는 통갱냉이와 콩(20%)을 섞은 주먹밥 한 개가 한 끼였다고 증언했다.⁴¹⁾

“갱냉이 옥수수 타겔 거.. 콩, 두부콩 같은 거 몇 알씩 섞어서 통조림 같은, 깡통맥주 1/3 정도 절반 자른 정도로 나왔다. 종이컵보다 더 작았다. 3cm 정도. 거기에 소금국을 줬다.”
(2009년~2011년 수감, NKHR 2013000115 2013-06-11)

수형자들은 주로 가족 등이 제공하는 면식으로 연명한다. 보통 가족이 면회를 오면 식량을 한끼번에 가져오는데, 이를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다고 한다.⁴²⁾ 면회를 오는 가족이 없는 경우 영양실조로 사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보통 하루에 3~4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며, 사망의 원인은 주로 허약(영양실조)이라고 한다.⁴³⁾

“1달에 한번 씩 [면회를] 갔다. 갈 때마다 속도전 가루를 넣어 준다. 50kg 폰폰이 넣어 준다. 거기에 여러 가지 생필품들도 챙겨야 한다. 영양가 있는 것들을 버무려서 넣어줬다. [...] 50kg을 넣어줬는데 거기에서 30%는 교화소에 바쳐야 한다. 10kg에 3kg은 바쳐야 한다. 바치는 것은 버무리지 않은 맨 가루만 바쳤다. 면회가 못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밖에 가족들이 거들떠보지 않거나 이혼을 한 경우이다. 그런 사람들은 영양 상태가 죽기 직전이다. 그래서 교화소에서 30% 떼어서 그런 사

40) 2011년 6월~2014년 3월 수감, NKHR2014000175 2014-10-21.

41)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3000124 2013-06-25.

42) 2010년~2013년 수감, NKHR2013000156 2013-08-20.

43) 2011년 6월~2014년 3월 수감, NKHR2014000175 2014-10-21.

람들을 먹인다. 면회를 해서 그런 것을 넣을 때는 30%를 바쳐야만 가능하다.”

(2012년 9월~2012년 11월 배우자 수감, NKHR2015000151 2015-11-17)

개천교화소에는 ‘히약반’과 ‘병반’이라고 불리는 위생실(병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이곳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형자들은 무리하게 진행되는 노동을 하는 중 부상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적절한 치료와 약품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가 사고 다음날 병원에 들어가 봐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골이 다 터진 상태로 붕대도 없이 그냥 방치했다고 했다. 피가 계속 흐르는데 피가 흘러야 한다고 피가 더 흘러야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냥 터진 채로 있다는 거다. 의식도 있었다고 했다. 빨리 수술 좀 해주지 왜 안하냐고 물었더니 선생들이 없다는 것이다. 언제 오냐고 했더니 평양 갔던 선생님들도 오는 게 늦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8일 날 저녁에 죽었다고 한다.”

(2012년 9월~2012년 11월 배우자 수감(중 사망), NKHR2015000151 2015-11-17)

나. 과도한 노동량

개천교화소 수형자들은 기상 후 노동을 시작해 별도의 식사 시간 없이 배급된 양을 먹고 다시 앉아 저녁시간까지 노동을 한다.⁴⁴⁾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으며, 수형자들은 하루 부과되는 과제의 양을 수행해야 한다.⁴⁵⁾

44) 2010년 수감, NKHR2013000191 2013-10-17.

45) 2010년 8월 수감, NKHR2014000012 2014-03-04.

“모자 같은 것은 하루에 4~5개, 식탁보는 그램수로 하는데 25g 이상. 자케트는 하루에 두 팔을 한다든지 이틀에 자케트 한 개를 한다든지 하루에 분량이 나온다. 그것을 못하게 되면 밤새도록 때린다. 잘못하면 다시 떠서 다시 해야 한다. 노동이라는 것이 기차게 고되다.”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3000124 2013-06-25)

주어진 작업량에 미달하거나 작업 결과 불량 시 1/2 또는 1/4로의 배급 감축의 급식 처벌이나 구타, 심할 경우 독방처벌 등이 이루어진다.⁴⁶⁾

“못 하면 처음에는 과제를 못 했다고 조금 욱을 먹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못 하면 급식 처벌이 들어간다. 이만한 밥에서 절반을, 절반밖에 못 먹는다.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과도하면 비판서를 쓰고 독감방에 들어간다. 독감방에 들어가서 3일 내지 일주일씩 있다.” [...] “머리카락을 가지고 눈썹을 만들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다 불량이 됐다. 평양에 올라갔다다가 내려왔다. 그래서 선생이 화가 나니까 의자 다리 같은 걸로 때렸다.”
(2009년~2011년 수감, NKHR2013000115 2013-06-11)

개천교화소의 경우 퇴소 시 급수에 따라 일정 정도의 노임이 지급된다고 한다. 1급 노임은 한 달에 50원, 수감된 지 1년 이상이 되는 2급 노임은 한 달 70원 정도이다.⁴⁷⁾ 그러나 관련 내용을 증언한 사람을 포함해 형기를 마치고 퇴소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노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46) 2010년 수감, NKHR2013000121 2013-06-25.

47) 2010년~2013년 수감, NKHR2013000156 2013-08-20.

다. 폭행·처벌·처형

일반적으로 교화소 내에는 임신부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⁴⁸⁾ 대부분 예심 과정에서 사건의 엄중성에 따라,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를 시키기 때문이다. 간혹 임신 사실을 숨기고 교화소로 들어 온 경우에는 형집행 정지가 이루어지는데, 해산하기 한 달 전에 집으로 보내지며, 출산 후 10달 뒤 다시 교화소로 돌아와야 한다. 한편, 대부분 교화소 내에서의 성폭행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교화소 내에서 선생(관리자)이 수행자를 성폭행 하는 경우 처벌을 받거나, 강제 제대하게 된다고 한다.⁴⁹⁾

그러나 교화소 내에서의 선생(관리자)에 의한 폭행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과정에서 과제량 미달이나 불량 등의 이유로 인해 구타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례에 관한 증언도 있다.

“할머니가 한분 있었는데 57살이었다. 허약자였는데 뜨개를 잘 못 떠서 선생한테 좀 엄하게 맞았다. 그리고 며칠을 일어나지 못했다. 식성이 되게 좋았는데 밥까지 못 먹을 정도로... 병원 보고 ‘병방’이라고 하는데, 병방에 입원했다. 병방이라는 게 솔직히 돼지우리보다도 더 못한 곳이니까... 그 병방에서 한 보름 인가 입원해 있었다. 그런데 죽었다고 했다. 내가 그 날 밤에 내 계획을 하느라(뜨개질을 하느라) 잠을 못 잤다. 우리는 불이 밝지 못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만한 전지를 가지고, 알 전지를 머리에다가 두르고 밤새 뜨개를 뜨는데 이상한 소리가... 우리 바로 옆이 병방이었다.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으로 죽을 때라고 했다.”

(2009년~2011년 수감, NKHR2013000115 2013-06-11)

48) 2010년 수감, NKHR2013000191 2013-10-17.

49)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3000124 2013-06-25.

“OOO. 형기 1년 가지고 왔는데 선생한테 맞아서 20일 만에 죽었다. 손으로 때렸는데 코가 터지고 얼굴이 터지고 피를 기차게 흘렸다. 한 20일 있다가 죽었다. 뜨개를 잘 안 뜨고 앉아서 말세를 썼다고. 말을 많이 하고 뜨개를 안 뜬다고 때렸다. 2010년도 여름에 죽었다.”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3000124 2013-06-25)

“12년도 퇴비살포 할 때면 3월 달 즈음 된다... 맞자 해서 맞은 거 아니고 가가 그날에 퇴비살포 했는데 우리 반에서... 퇴비를 발자락에 이렇게 뿌리는 거... 야가 몸 상태가 허약에 걸려서 “앉아서 좀 앉아서 좀 쉬다가 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아가 “일 할 때는 빨리 해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담당 보안애가 옆에 서서 듣고서리 “야 남 일하자는 거 왜 뒷다리 잡아당기냐” 이러면서 호미 자루가지고 딱 때렸는데 골이 터져가지고 그 때 당시 겨울이니까 목태를 했던 말이다 긴 마후라가지고 목태를 했었는데 피가 거기서 칼칼 나와서... 여기에 고였다. 그러고서리 가가 며칠 동안 앓다가 그러다가 허약 걸려서 죽었다. 그거는 딱 기억이 난다.”

(2010년~2013년 수감, NKHR2013000156 2013-08-20)

교화소를 탈주하는 경우에는 공개처형된다.

“2010년 7월인가에 교화소에서 봤다. 도주자가 생겼는데 그 도주자를 총살했다. 여자였다. 도망치면 이렇게 죽인다고 교화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도망치지 말라고 이런 내용으로...”

(2009년 4월~2011년 10월 수감, NKHR2013000115 2013-06-11)

라. 수감 중 사망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수감 중 사망은 대부분 과도한 노동량, 부족한 식사량으로 인한 허약(영양실조), 위생 상태와 의료 시설의 부족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제시한 사

례와 같이 노동·작업 중 구타를 당하거나, 부상을 당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사례에 관한 동료 수형자 또는 수형자 가족의 증언도 있다.⁵⁰⁾ 2010년에 5개월 간 수감된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뜨개반에서 한 달에 보통 10명씩 사망한다고 했다.⁵¹⁾

수형 기간 내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며, 만기 날에 가족들에게 통보한다.⁵²⁾ 남자 수형자들이 사체를 처리하며,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하지 않고, 화장하거나 교화소 인근 산에 매장한다.⁵³⁾ 시체를 모아 처리하기 때문에, 여자 수형자들이 생활하는 건물 1층 창고 옆에 사체실이 있다.⁵⁴⁾

V. 결 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정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⁵⁶⁾ 한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

50) 2012년 9월~2012년 11월 배우자 수감, NKHR2015000151 2015-11-17.

51) 2010년 수감, NKHR2013000191 2013-10-17.

52) 2009년~2011년 수감, NKHR2013000115 2013-06-11.

53) 2011년 6월~2014년 3월 수감, NKHR2014000175 2014-10-21.

54) 2014년 7월~ 2015년 7월 수감, NKHR2015000173 2015-12-01.

5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항.

5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3항.

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구금시설의 수형자 역시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도달 가능한 수준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의 비인도적이고 열악한 구금환경은 인간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처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형자들은 대부분 허약으로 표현되는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된 보급품 및 생활필수품이 결여된 상태이다. 국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노동을 형벌로 부과할 수 있으며, 형벌의 부과로 수반되는 노동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⁵⁸⁾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교화소의 비인도적 노동환경과 과도한 노동 부과는 교정시설이 지향하는 교화의 목적을 넘은 것으로 보이며, 수형자의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화소 내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내 교화소는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거리 및 개천교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북한 각 지역에 퍼져 있는 다른 교화소들 또한 전거리 및 개천교화소와 다르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북한 내 다른 교화소 내에서도 전거리 및 개천교화소와 유사한 형태로 수형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교화소가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교화형을 집행하기 위한 구금시설이라는

57)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항.

5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3(b).

관점에서, 북한 체제 내 범죄자 내지 일탈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과 처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체제에서 범죄자로서 교화소에 수감된 수많은 수형자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 ‘죄인’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기 보다는 오히려 갖은 구타, 가혹행위, 영양실조,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내 교화소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당국과 접촉해야 할 것이다. 남북 교정당국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남북 기술협력 논의 진전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 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권 관련 왜곡된 인식이 변화될 것이며, 구체적 차원에서 교화소 관련 환경 및 제반시설 개선 논의가 동시에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당국에 대해 다양한 비판 및 압박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북한 교화소 내 여러 인권침해 사례가 개선되고, 북한인권 전반의 여러 영역에서 활발한 개선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www.kinu.or.kr

북한 교화소